

KIMES 2026 포상 계획

2025. 12. 19.

한국이앤엑스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 추진 배경

- 제41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2026.03.19.~03.22)를 맞이하여
 -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수출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 이를 통하여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의 수준을 향상시켜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2. 기본 방침

□ 포상 대상자 추천원칙

- 포상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공적 내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실시를 통한 사전 검증절차가 완료된 자에 대하여 추천

Ⅱ

포상 계획

1. 포상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년 3월 19일 (목) 11:00 (예정)
- 장소 : 코엑스 전시장 ('KIMES 2026' 개막식 행사 시 포상 예정)

2. 2026년 포상 계획(안)

- 포상 인원(안)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2명)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명)
 -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3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2명)

Ⅲ

추진 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포상대상자 선정
- 해당 부처에 제출
- 각 부처별 표창장 인수
- 'KIMES 2026' 행사 개막식시 포상 수여

IV 행정 사항

- 제출기한 : '2026.01.07 (수) 18시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경영지원부
송해은 대리(070-8892-3742 / eun@medinet.or.kr)

< 추천기준 및 추천제한 >

1. 추천기준

훈격	추천기준
국회 장관 및 처장 표창	○ 본 전시회에 3년이상 참가한 의료기기업체 소속 대표 및 임원으로서 신기술의 료기기 개발 등으로 국산의료기기의 내수확대 및 수출확대를 통하여 우수의료 기기보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로서 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 반드시 2026년도 본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선 고려함.

2.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화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
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
함

10)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등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업체 및 그 임원(처장표창)

가) 최근 2년 이내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와 그 임원 등

나)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업체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행정처분 관련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때와
시정명령 등 그 처분사항이 미미한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대상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예) 추천일이 2026. 4. 29.인 경우 : 2024. 4. 30. ~ 2026. 5. 29.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일지라도 해당 행정처분 사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추천 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 대상자별 제출서류 목록

1. 포상·표창 추천자 현황 1부(각 부처별 양식 참고)
2. 공적요약서 1부(각 부처별 양식 참고)
3. 공적조서 1부(각 부처별 양식 참고)
4. 현지확인서 1부(각 부처별 양식 참고)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각 부처별 양식 참고)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
6.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각 부처별 양식 참고)
7. 포상추천 대상자 등 연락처 1부(공통)
8.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 1부 - 기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 조회용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체는 해당 허가증·신고증 사본을 같이 제출

□ 제출서류 작성요령

서류명	작성 요령
공적조서	○ 공적조서는 반드시 각 부처별 포상양식을 사용 ○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1부 제출 [조사자 및 추천관은 조합에서 작성]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수치 등을 기록 ○ 공적조서 상의 추천훈격란 및 추천순위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어야 함. ○ 공적요약서와 공적조서 상의 수공기간은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기준 시점은 2025년 작성일 현재를 기준 하여 작성
- 포상 추천자 훈격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제출서류 작성 시 각 부처별 작성양식 및 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제출
 -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하고, 공적개요는 반드시 50자 이내로함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조사자란 및 추천관란은 조합에서 작성함.)
 - 기관명칭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으로 기재
- 포상·표창추천자의 구비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여 제출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26.01.07(수)까지** 제출
 - * 기일 초과 추천 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제출기한 준수
- 문의사항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경영지원부 송해은 대리에게
(☎ 070-8892-3742/eun@medinet.or.kr) 문의